

##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  
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 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 (수렵기간) 본 수렵장의 수렵기간은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관리사무소) 도지사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  
출장소. 구청. 읍. 면. 동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  
다.

제6조 (조수포획 승인등)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  
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 군수의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  
에 수렵면허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한 포획기간 변경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을 승인받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국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8조 (사용료의 사용제한) 수렵장의 사용료 수익금은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하고 잔여 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설정, 운영, 관리 경비
2. 조수보호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한 조수보호사업
  - 가. 표지판 설치, 새집가설 및 먹이식물 식재등 조수보호구 설정관리에 따른 보호사업
  - 나. 야생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 다. 야생조수의 서식 실태조사.
  - 라. 조수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 먹이주기, 야생조수진료센타 운영 및 조류 관측소 설치등 조수보호사업
  - 마. 조수애호 모범교 지정관리, 수렵강습, 조수애호 주간행사, 야생조수관람장 조성 및 홍보물 제작등 조수보호 계몽사업
3. 야생조수 보호법식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보조
4. 기타 수렵장 설정에 따른 총기보관관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홍보

제9조 (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부터 1km 이내의 장소

3. 공원구역 및 관광지
4. 문화재 보호구역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 보호구역
7. 도시계획 구역
8.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9.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조수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0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업종(라이플총은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 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안에서 하는 총렵

제11조 (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내용에 의한다.

제12조 (포획조수의 신고) ①포획자는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조수별 포획수량을 3일마다 수렵장에서 가까운 시.군. 출장소 또는 구청. 읍. 면. 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포획승인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하는 자
2. 제1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수포획 승인증 회수) ①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 발급관서 또는 가까운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회수된 포획승인증이 당해군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 것은 발급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렵안내등) ①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업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의 설치) ① 도지사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시판 및 수렵금지 표시판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 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총법에 의한 사고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제한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포획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업무대행등) ① 도지사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법'규칙'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 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북도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렵지도 단속등) ①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획승인증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알, 집, 박제품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기타 불법행위

②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법률의 준용)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조수보호및수렵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